

예 산 총 칙

2017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18,674,026	18,560,221
일반회계	549,683,157	16,490,495
특별회계	68,990,869	2,069,726
공기업특별회계	55,540,448	1,666,213
상수도사업특별회계	27,825,886	834,777
하수도사업특별회계	27,714,562	831,437
기타특별회계	13,450,421	403,513
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	1,442,435	43,273
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	750,000	22,500
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	252,968	7,589
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	8,800,087	264,003
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	1,879,725	56,392
지하수특별회계	325,206	9,756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,863,319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5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